
2024년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문

2024년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경기도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2024년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활성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아래 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8월 21일

경기도지사

1 | 공고 개요

- 사업명 : 2024년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활성화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24. 8. 21.(수) ~ 10. 25.(금) 17:00 限
 - ※ 모집기간 연장(9.30. 마감 → 10.25. 마감)
- 신청방법 : 이지비즈(www.egbiz.or.kr) 공고 확인 및 온라인 서류 제출
- 지원규모
 - 우수기업 20개사 내외 선정(위탁기업 및 감액조정 수탁기업)
 - 우수기업 20개사 판로지원금 지급(최대 30백만원, 도내소재 위탁기업)
- 신청자격 : 도내 중소기업 1개사 이상(수탁기업)과 거래하고, 납품대금 연동특별약정서를 체결한 위탁기업
- 자격요건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1개사 이상과 연동특별약정서를 체결한 기업
 - 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
 - 국세 및 지방세 납부 기업(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선정제외)

□ **사업내용** : 연동제 우수기업 모집 · 선정, 인센티브 지원

□ **제출서류**

NO.	제출서류	확인방법	비고
1	신청서식 (서식1~5_한글파일) 1부.	소정양식(한글파일) 참조	필수 (※위탁기업)
2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국세청(www.hometax.go.kr) 정부24(www.gov.kr)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3	중견기업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 1부.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국세: www.hometax.go.kr) (지방세: wetax.go.kr)	
5	수탁기업 명부 (소정양식_엑셀파일) 1부.	소정양식(엑셀파일) 참조	필수
6	납품대금 연동 운영실적 (소정양식_한글파일) 1부.	소정양식(서식6, 엑셀파일) 참조	필수 (별도 요청)
7	공장등록증명 (경기도 소재 해당시) 1부.	정부24(www.gov.kr)	선택
8	산업단지 RE100 참여기업 협약서, 연동대상 확대 실적 각 1부.	*연동대상 확대 실적 : 원재료 외 노무비, 전기료를 연동대상에 포함한 실적	선택 (가점)

□ **유의사항**

- 필수서류 미제출시 **요건 불충족으로 간주하여 참여기업에서 배제할 수 있음**
- **납품대금 연동 운영실적은 서류검토 적격기업에 한하여 10월 중 별도 제출**
- 모든 서류는 유효기간 내 발급분만 인정되며 필요시 주관기관에서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음
- 대표자의 직인 또는 서명이 누락되어 있는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제출서류 중 엑셀파일은 원본으로 제출하고 한글파일(서식 1~5)은 작성 및 날인 후 스캔 본하고 **제출서류는 하나의 PDF파일로 병합하여 제출** 요망(엑셀자료 별도)
- 동 사업에 신청하는 기업은 **공고문, 사업내용, 신청서 양식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신청 시 부주의로 인한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2

사업 개요

- 사업명 : 2024년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활성화 지원사업
- 사업목적 :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로 중소기업 생산원가 부담완화와 납품공급망 안정에 기여하고 기업 간 상생협력 문화 확산
- 추진절차

구분	공고·접수	요건검토	실적 제출	심의위원회	인센티브 지원
내용	공고 및 접수	약정서 등 서류 검토	연동제 운영 실적 제출	심의를 통한 우수기업 선정	과제지원 등 인센티브 지원
시기	8~10월	10월~11월			11월(예정)

□ 사업내용

○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란?

- 위·수탁기업이 제조 등에 필요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가격이 납품대금의 5% 이상을 차지하고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

구분	중앙정부(의무화)	경기도(인센티브)
연동시작비율	위·수탁기업이 ±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연동적용대상	원재료	주요 원재료 및 재료비, 노무비, 경비
원재료기준	납품대금의 10%이상	납품대금의 5% 이상
소기업 적용여부	적용제외	포함
거래금액	1억원 이하 적용제외	5천만원 이상 전부포함
거래기간	90일 이내 적용제외	제한없음

※ 경비는 ‘가스비’, ‘전기료’에 한함.

□ 우수기업 선정평가

○ 평가요소

구분	평가항목		내 용	배점
정량 평가 (80)	경기도형 참여 (50)	수탁기업 수	약정을 체결한 경기도소재 수탁기업 수	20
		기업규모	위탁기업 규모	10
		전체거래금액	전체 납품대금(1억원 초과여부)	10
	약정체결 내용 (10)	연동시작비율	연동조건	10
	조정금액 지급 (20)	지급액	실제 조정해준 금액	20
정성 평가 (20)	상생협력 의지(10)		연동제 참여를 통한 기업의 상생협력 의지 (최초시행 여부, 조정횟수 등)	10
	기대효과(10)		향후 납품대금 연동제 운영 계획 등 (확대도입계획 등 고려)	10
평가점수 합계				100
가산점 (10)	사업 참여		산업단지 RE100 참여기업	2
	연동대상 확대		원재료 외 노무비·전기료를 연동대상으로 한 기업	3
총계				105

※ 위탁기업이 연동특별약정에 따라 수탁기업의 납품대금을 감액 조정하는 경우 수탁기업도 함께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음.

다만, 수탁기업으로 참여한 기업에 대한 판로지원금 혜택은 제공하지 않음.

○ 실적제출

- 신청기업 중 적격기업에 한하여 별도 요청, '24년 10월 31일까지의 실적

※ 공고 기간 전, 연동제 의무화 시행일('23.10.04.) 이후 체결한 연동특별약정서에 따라 대금조정 실적이 있는 경우 포함

○ 제출서류 : ① 실적보고서[서식6 참조], ② 수탁기업별 연동 실적 현황

[예시]

연번	수탁 기업명	대상약정 명칭	체결 일자	대상 물품명	대상 원재료	원재료 기준지표	조정 전 납품단가	조정 된 납품단가	납품단가 조정 전 납품금액	납품단가 조정 후 납품금액
1	A사	동 케이블(CC - 0 0 1) 제작 위탁	22.1.1	동 케이블(CC -001)	동	L M E 고시가 (전기동고 시자)	1,000원	1,100원	10백만원	12.5백만원

※ 금액지급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작성서식, 세금계산서, 지출명세서 등) 요청 예정

3

우수기업 지원

□ 우수기업 혜택

- 경기도지사 표창
- 우수기업 및 우수사례 대외홍보 지원
- 금리혜택 및 중소기업지원사업 신청 가점 등 14종 인센티브 부여
- 기업 맞춤형 과제 추진을 위한 판로지원금 지급
 -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3천만원 지원(단, 부가세 및 초과금액 기업부담)
 - 지원기간 : 2024년 11월 말까지 집행된 과제에 한하여 지원함
 - 지원항목 : 마케팅, 사업화, 일터개선, CSR(사회적책임경영)

추진과제		지원내용
구분	과제명	
마케팅	광고홍보	잡지광고 또는 홍보동영상 등 제작비 지원
	홈페이지 제작	홈페이지(국문, 영문 등) 제작비 지원
	카탈로그 제작	제품카탈로그(국문, 영문 등) 제작비 지원
	국내외 전시 참가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 소요비용 지원
	기타 판로개척	기타 기업이 필요로 하는 판로개척비용 지원
사업화	시제품 제작	제품 개발을 위한 목업 제작비 지원
	금형제작	제품 금형 제작비 지원
	디자인개발	제품·포장·시각디자인 개발 지원
	특허권리화	국내·외 특허·상표·디자인·PCT 출원 지원
	규격인증획득	국내·외 규격인증, 시험분석비 지원
일터개선	공정 및 업무 개선	업무 프로세스 효율화를 위한 공정 장비 및 시설 구축 지원
	안전·보건 관리	사업장 내 안전·보건 관리 개선 위한 시설 구축 지원 사업장 내 위험요소 제거 위한 체계도입 지원
	일터 환경개선	사업장 내 근로자 복지 강화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 직원 근무만족도 증진을 위한 행사, 건강, 상담 지원
	기타 일터개선	기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일터개선 지원
CSR	사회적책임경영	기업의 사회적책임경영 고도화 비용 지원

□ 우수기업 지원내용

- 경기도지사 표창 : 지역, 규모 불문 제공
- 금리혜택 및 지원사업 가점 : 도내 소재 중소기업 ※ (붙임1) 참조
- 판로지원금 지급 : 도내 소재한 우수 위탁기업 20개사(중견·중소)
 - 2024년 1월 1일 이후 진행된 과제에 한하여 소급적용 가능
 - 심의위원회 선정 점수 기준, 고득점 순 20개사(도내, 위탁) 차등지원

(단위 : 천원)

구분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합계
기업 수	1개사	3개사	5개사	11개사	20개사
지급한도	30,000	15,000	10,000	5,000	180,000

※ 선정 기업에 대한 지급 한도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4 유의사항

□ 신청제한

- 공고일 현재 지방세 또는 국세 체납중인 기업
- 부도, 법정관리, 회생신청, 자본전액잠식, 휴업·폐업 상태인 기업
- 외부감사기업 중 직전연도 감사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인 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환수조치 등

-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선정을 위하여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별도로 합의하거나, 탈법행위 등 조정금액 지급을 회피한 경우
 - ① 상생협력법 위반 의심기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신고
 - ②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중소기업지원사업 신청 제한 조치
 - ③ 보조금 일체 환수

[상생협력법 제43조제2항]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수·위탁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용을 피하려는 경우 과태료 5천만원 이하

- 거짓,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우수기업 선정 및 인센티브 지원금의 부정 사용이 발견된 기업은 보조금 환수

[보조금법 제33조]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기타사항

- 신청기업 수가 지원목표보다 부족하거나,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신청기간 연장 또는 추가 모집 가능
- 우수기업 선정 후, 신청제한 사항 발생 시 선정 취소 가능

5 문의처

- 신청문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SG팀 문지운 대리

Tel : 031-259-6284 E-mail : un_moon@gbsa.or.kr

- 시스템문의 : 이지비즈 전산 담당자(031-259-6299)

구 분		인센티브 내용	부 서
공통	표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도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표창 	
중견 중소 기업	판로지원비 (위탁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도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인센티브지원금 지급 -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0.3억원 - 지원항목 : 마케팅, 사업화, CSR(사회적책임경영) 등 *경기도내 소재한 우수 위탁기업(중견·중소) 	공정경제과
중소 기업	금리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기업평가시 가점(10점) 	지역금융과
	기업지원 사업 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사업(1점)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2점)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2점) 소재부품장비 기업 육성지원사업(1점) 뿌리기업 경쟁력 강화 및 뿌리산업 육성지원사업(1점)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2점) 	특화기업 지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초보기업 전담멘토 지원사업(2점) 경기 수출기회 바우처사업(2점) 수출기업 교류협력사업(2점) 해외 경기비즈니스센터(GBC) 운영사업(GMS사업)(2점) FTA활용 지원사업(2점) 해외전시회 참가지원사업(단체관, 개별지원 10점) 	투자통상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3점) 경기도 기술개발사업(1점) 	디지털 혁신과
	세무조사 유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정기간 지방세 세무조사를 유예 	조세정의과
	유공납세자 우선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도 유공납세자 선정시 우선선발 	세정과

※ 2023년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에 선정되어 판로지원금을 지급받은 기업(10개사)은 2024년 우수기업 혜택으로 판로지원금 지원을 제외하고 인센티브 부여

Q1 ~ Q7)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문의**Q1.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이란 무엇인가요?**

A1.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Q2.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2. ①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납품대금의 5% 미만을 차지하는 경우,
 ② 납품대금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납품대금 연동 약정시 주의사항

- 납품대금의 5% 이상을 차지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대상으로 선정해도 가능
- 납품대금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도 가능
- 위수탁거래 기간에 대한 제한 없음

Q3. 납품대금 연동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3. 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에 따라 조정일마다 원재료 기준가격의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의 변동률을 확인하고, 그 변동률이 조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납품대금 연동 산식에 따라 물품 등의 납품대금의 금액을 산출합니다.

② 위탁기업은 제1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물품등의 납품대금을 조정합니다.

③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제2항에 따라 물품등의 납품대금이 조정된 경우, 조정대금 반영일, 비교시점의 원재료 기준가격 및 조정된 납품단가를 「납품단가 변동표」에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합니다.

Q4.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4. ①물품의 명칭, ②연동대상이 되는 재료비·노무비·경비, ③연동대상 가격 기준 지표, ④연동대상 기준가격의 변동률 산정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⑤조정요건, ⑥조정주기, ⑦조정일, ⑧조정대금 반영시점, ⑨납품대금 연동 산식 등을 수탁기업과 협의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Q5. 연동대상 재료비, 노무비, 경비는 무엇을 뜻하나요?

A5. 납품대금 연동을 하기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의하여 정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말하며, 전체 대금의 5% 이상을 차지해야 합니다. 비용이란 약정 체결 시점에 수탁기업이 연동대상을 구입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말하며, 부가세가 포함됩니다.

‘**재료비**’는 재료량 × 단위당 가격을 말하며, 계약목적물의 물품 등을 제조·공사·가공·수리·용역·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규격별 재료량에 그 단위당 가격을 곱한 금액입니다.

구분		내용
직접재료비	주요재료비	계약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
	부분품비	계약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부품 및 경비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 외주품의 가치
간접재료비	소모재료비	기계오일, 접착제, 장갑, 연마재 등 소모성 물품의 가치
	소모공구·기구·비품비	내용연수 1년 미만으로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치
	포장재료비	제품포장에서 소요되는 재료의 가치

* 단, 법률 상 ‘주요 원재료’인 천연재료(금, 철, 구리, 알루미늄 등), 화합물(폴리에틸렌, 폴리염화비닐 등), 가공물(금속강, 골재, 목재, 콘크리트, 선철 등), 중간재(자동차부품, 기계부품, 철강재, 변압기, 반제품 등)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하며, 해당 가격 변동 시 납품대금을 연동하기로 위·수탁기업이 협의하여 정한 원재료도 포함

‘**노무비**’는 계약목적물의 물품 등을 제조·공사·가공·수리·용역·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공종별 노무량에 그 노임단가를 곱한 금액입니다.

- 노무비 기준은 최저임금을 기본으로 하되, 업종별·직종별 노임단가가 상이하기 때문에 국가 통계포털(KOSIS.kr)의 중소기업업임금 증감률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간 약정한 노무비기준을 정하여 노무비 증감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대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ex) 의류업을 영위하는 위수탁기업이 의류임가공위탁 시 노무비가 전체 납품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5%를 넘고 연간거래계약 중 최저임금이 인상된 경우 인상율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적용 가능

‘**경비**’는 물품 등을 제조하는데 소요되는 비목별 합계액을 말합니다. 다만, 본 사업에서의 경비는 ‘가스비’와 ‘전기료’로 한정됩니다.

- ‘가스비’는 한국가스공사 산업용 도매요금에 따라 지역 공급업체 소매가를 기준으로 정할 수 있으며, 천연가스 외 헬륨 등 타 가스류 사용시 최종공급가로 할 수 있습니다.
 - ‘전기료’는 한국전력공사 산업용 전기료(분기별 등)를 기준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Q6. 연동대상 가격 기준지표와 기준가격의 개념은 무엇인가요?

A6. ‘연동대상 가격 기준지표’란 연동대상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가격 상승 또는 하락 정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 지표이고, ‘연동대상 기준가격’은 연동대상 가격 기준지표에 따른 특정 시점의 연동대상의 단위당 가격을 뜻합니다.

Q7. 조정 요건과 조정주기, 조정일의 개념은 무엇인가요?

A7. ‘조정요건’이란 원재료 기준가격이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에 위탁기업과 수탁 기업이 100분의 10 이내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할 경우 납품대금 연동을 시행하기로 한 요건을 말합니다. ‘조정 주기’란 조정요건을 감안하여 납품대금 연동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주기를 말하며, ‘조정일’이란 그 조정 주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날을 말합니다.

Q8 ~ Q14) 신청 및 접수 문의

Q8. 온라인 신청서 접수는 어떻게 하나요?

A8. 이지비즈 사이트에서 [지원사업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을 클릭하시고
 ①기업정보 ②공장정보(선택) ③담당자 정보 ④종업원 ⑤매출액, 제품정보 등에
 대해서 필수값(빨간색 표시)을 입력해주시고 [별첨파일] 에 자료 업로드 후 [접수
 완료] 버튼을 눌러 접수하시면 됩니다.

Q9. 파일 업로드는 어떻게 하나요?

A9. 온라인 신청서 하단에 [별첨파일] 에 신청 관련 서류들을 각각 업로드 하십시오.
 하단의 [찾아보기] 버튼을 누르면 파일을 하나씩 여러 개 올릴 수 있습니다.

	<p>※ 파일 1개당 1MB 이내로 용량이 제한되어 있어, 용량이 큰 파일은 나누어서 여러 번 업로드 하셔야 합니다.</p>
--	---

Q10. 신청서는 전부 다 입력해야 하나요?

Q10. *빨간색 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필수적으로 입력, 제출해야 하는 부분이며,
 나머지는 해당사항이 있는 기업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p>☞ 종업원 : 2024년 9월 기준 상시근로자수</p> <p>☞ 매출액 : 2023년 결산기준 ※ '원 단위' 주의!</p> <p>☞ 주생산물 : 기업의 주력 아이템, 서비스업의 경우에 주요 사용내용을 기재</p>
---	--

Q11.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A11. 신청 시, 필수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미제출 시 접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① ~ ④, ⑥는 위탁기업에 대한 서류임(수탁기업 정보는 ⑤에 기재하여 제출)
 ① 신청서식(서식 1~5 한글파일), ② 사업자등록증명원, ③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확인서,
 ④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⑤ 수탁기업 명부 ⑥ 공장등록증명(경기도 소재 시)

Q12. 신청기업이 경기도 기업이 아닌 경우, 신청에 제한이 있나요?

A12. 아닙니다. 신청기업(위탁기업)의 소재지나 기업 규모는 신청 제한 요건이 아닙니다.

Q13. 수탁기업 중에 경기도 소재기업이 없는데, 신청할 수 없나요?

A13. 신청할 수 없습니다. 동 사업의 신청자격은 도내 소재한 수탁기업 최소 1개사 이상과 거래하는 위탁기업이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우수기업 평가 시 경기도 소재 수탁기업과의 체결실적만 집계합니다.

Q14. 공고 시작일 이전에 납품대금 연동제에 참여한 경우, 신청이 불가능가요?

A14. 공고일 이전에 약정을 체결했다라도 공고기간 내에 동일한 내용으로 납품대금 특별약정서의 제출이 가능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Q15 ~ Q23) 우수기업 혜택 및 평가내용 문의

Q15. 납품대금 연동제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15. 평가 기준에 따라 참여기업 중 우수한 위·수탁기업 20개사 내외를 선발하여 경기도지사 표창, 인센티브 등의 혜택을 부여합니다.

Q16. 우수기업으로 선발되면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요?

A16. 기업규모 및 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혜택이 제공됩니다.

구분	2024년		2025년(추가)
	도지사표창	마케팅·사업화 지원비(위탁기업)	금리혜택 및 지원사업 가점
대상	지역·규모불문	경기도 소재 중견기업, 중소기업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Q17. 마케팅, 사업화 지원비의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무엇입니까?

A17. 마케팅, 사업화, 일터개선, CSR 분야로 나뉘며, 자세한 과제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마케팅	사업화	일터개선	CSR
광고홍보, 홈페이지 제작, 카탈로그 제작, 전시박람회 참가, 기타 판로개척 비용	시제품 제작, 금형 제작, 디자인개발, 특허권리화, 규격인증획득 지원	공정 및 업무개선, 안전·보건 관리, 일터환경개선, 기타 일터개선	기업의 사회적책임경영 고도화 비용 지원

Q18. 지원금 한도는 얼마이며, 그 한도는 동일한가요?

A18. 아닙니다. 우수기업 부문별로 지원금 한도가 상이합니다.

구분	최우수(1개사)	우수(3개사)	양호(5개사)	보통(11개사)
지원금 한도 (기업당, 최대 금액)	30,000천원	15,000천원	10,000천원	5,000천원

Q19. 보조금 지원 외에 제공되는 인센티브는 어떤 것이 있나요?

A19.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기업 평가 시 가점 등 총 14종의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의 [붙임1] 경기도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인센티브 목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Q20. 우수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 시점은 언제입니까?

A20. 2024년 10월까지의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Q21. 우수기업 선정평가 항목과 내용은 무엇입니까?

A21. 정량평가(80점), 정성평가(20점)로 나뉘며,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량평가) : 수탁기업 수, 기업규모, 전체거래금액, 연동시작비율, 조정금액 지급

(정성평가) : 연동제 참여를 통한 기업의 상생협력 의지, 향후 납품대금 연동제 운영계획

Q22. 실적 평가를 위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까?

A22. 납품대금 연동실적 보고서 및 수탁기업별 연동실적 현황(지정양식)과 대금 지급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등

Q23. 평가 시, 가산점은 무엇이며 점수를 받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A23. 가산점 부여는 두 가지 경우입니다.

① 산업단지 RE100 참여기업

② 재료비 외 노무비와 경비를 연동대상으로 정한 기업